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숙박료"를 "숙박비"로 하고, "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구분한다."를 "이전비,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 한다."로 한다.

제3조중 '국내여비규정을, 국외여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'를 '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'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